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와 정관 제 22조에 의거 제 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3월 29일(수)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81 당사 4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보고사항>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기수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선임의 건 (상근감사 이춘래 선임의 건)
제4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별지 참조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3월 19일 ~ 2017년 3월 28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6.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03.14

주식회사 뉴프렉스

대표이사 임우현 (직인생략)

(별첨 2)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기수 선임의 건)

성명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관계	당사와의 거래내역
김기수 (60.09.11)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이사회	없음	없음
	- 전 신한회계법인 근무			
	- 현 세원회계사무소 대표 회계사			

(별첨 3) 상근감사 선임의 건 (상근감사 서효종 선임의 건)

성명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관계	당사와의 거래내역
이춘래 (49.12.28)	-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이사회	없음	없음
	- 전 디스플레이솔루션스 대표이사			
	- 현 이엑스엔디 대표이사			

(별첨 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1)	4(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00,000,000	2,000,000,000

(별첨 5)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50,000,000	50,000,000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문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 유형

- 직접행사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 대리행사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 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송부처** : 150-9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 **송부시한** : 2017년 03월 21일(※ 주주총회 5영업일 전)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년 03월 17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u>뉴프렉스의</u> 17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u>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u>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